

의정부지방법원 2018. 4. 26 선고 2017나2039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고,항소인 A

피고,피항소인 B

변론 종결 2018. 4. 5

판결 선고 2018. 4. 26

제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. 2. 10. 선고 2015가단17418 판결

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

피고는 원고에게 의정부시 C 임야 2, 764㎡ (이하 ' 이 사건 임야' 라 한다) 지상의 별지 감정도 표시 1, 2, 3, 4, 5, 6, 7, 8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건물(이하 '이 사건 건물'이라 한다)을 철거하고, 위 임야를 인도하라.

이 유

1. 제1심 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(원고는 치료청구를 위한 감정을 신청하지 않는 등 결국 이 사건 청구에서 치료청구를 제외하였다).

2. 결론

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,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고충정판사 박창우판사 정은영

별지